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38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종배 · 안철수 · 김용태
이종욱 · 권영세 · 김승수
김기웅 · 서명옥 · 이소희
송석준 · 이만희 · 엄태영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인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구인자가 제출된 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7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이용 및 제공의 목적·범위·기간 및 대가에 관하여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제5항, 제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구인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심층심사 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이용 및 제공의 목적·범위·기간 및 대가에 관하여 미리 구직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u>제5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u>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u>) ① <u>제9조</u> ,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	제12조(<u>시정명령</u>) ① <u>제4조제5항, 제9조</u> ----- ----- -----

④ (생 략)	<u>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u> <u>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u> <u>구인자</u> ④ (현행과 같음)
---------	--